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예비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예비군법」이 개정('21.4.13. / 시행 '21.10.14.)됨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민간의료시설 치료 기간 및 치료비 청구·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경우, 군 보건의료시설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, 민간의료시설 구분없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인 민간의료시설 치료 관련 사항 삭제
(안 제24조제2항, 제25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1. 4월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대통령령 제 호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을 삭제하고, 제25조제1항의 “법 제9조제2항 단서에”를 “법 제9조제2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'21.10.14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 (부상자의 치료) ① (생략) ② <u>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,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,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,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24조 (부상자의 치료) ① (생략) ② <삭 제>
제25조 (치료비의 지급) ① <u>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,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</u>	제25조 (치료비의 지급) ① <u>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,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</u>

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예비전력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44